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6차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한 지반침하 사고조사 의무화 등 》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44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제221234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하안전관리 기술 등 지원 추가(안 제6조)	2
나.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1조의2 신설)	8
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의무화 등(안 제46조)	15
라. 지반침하 원인 제공자의 원상복구 의무 명시(안 제46조의2 신설)	24

I.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제221234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대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8. 25.

다. 회 부 일 : 2025. 8.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미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46조 및 제11조의2·제46조의2 신설).

3. 검토의견

가.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하안전관리 기술 등 지원 추가(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③ ~ ⑥ (생략)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 교육훈련 및 정보체계 활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 제6조는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 교육훈련 및 정보체계 활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867건으로, 2020년 284건에서 2024년 10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연 평균 173.4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였음.

【최근 5년(2020~2024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연 평균
284	142	177	162	102	867	173.4

※자료: 국토교통부

*주- 지반침하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394건), 다짐(되메우기) 불량(156건), 굴착공사 부실(85건) 등이 있음.

2025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144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지하안전 정보시스템¹⁾에 신고되어 있는데,²⁾ 서울 명일동,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부산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지반침하 사고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 지하안전정보시스템: <https://www.jis.go.kr>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2025.9.9. ‘지하안전정보시스템-지반침하사고-지반침하사고 목록’ 검색
(검색조건: 사고일자 2025.1.1.~2025.8.31.)

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관리 실태점검, 현장조사 등³⁾을 통해 지반침하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해당 위험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하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과 예산 및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체적인 지반침하 점검⁴⁾보다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⁵⁾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4) 각 시·도의 최근 5년간 현장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부산·경북·울산·광주의 5개 시·도 외에는 현장조사 사례가 없고, 경북·광주의 경우에는 각각 2022년과 2024년에만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음.

【최근 5년(2020~2024년) 시·도의 현장조사 실적】

(단위: km)

시·도	서울	부산	경북	울산	광주
합계	13,944	4,188	321	48	38
2020년	1,958	724	-	27	-
2021년	1,645	843	-	6	-
2022년	1,600	687	321	4	-
2023년	3,641	920	-	5	-
2024년	5,100	1,014	-	6	38

※자료: 국토교통부

*주- 현행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현장조사 실적임(현행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로서의 의무적 안전점검 실적은 제외)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⁶⁾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지하개발 사업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⁷⁾(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함)에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술 개발, 교육훈련, 정보체계⁸⁾ 활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동일 도로에 대한 중복 조사 실적도 포함

5)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지반탐사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5년(2020~2024년)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방자치단체 지반탐사 지원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청대상(개소)		181	266	388	576	627
지원	점검대상(개소)	207	332	375	524	601
실적	탐사연장(km)	925.13	1,143.43	1,386.14	1,665.28	2,308.28

※자료: 국토교통부

6) 서울경제, “[기고]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해야”, 2024.10.31.

동아일보, “어디서 폭 빠질지 모르는데…전국 싱크홀 관리인력 12명뿐”, 2025.3.28.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담당 전문인력과 예산 및 장비 등 부족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기본계획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 교육훈련 및 정보체계 활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제6조제3항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본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제6조제5항¹⁰⁾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기본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통보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제34조제5항11)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안전관리 기술 개발, 교육훈련 및 정보체계 활용 등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지원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나, 예산·인력 확보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는바, 기술·교육·정보체계 등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역량을 증가시키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도 지원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① <u>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u>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u> 2. <u>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u> 3. <u>지하안전관리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4. <u>기본계획 수립·시행·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위원장이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u>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2. <u>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u>

현행	개정안
	<u>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u> ④ <u>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u> ⑤ <u>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u>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u>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⑦ <u>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개정안 제11조의2는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지하안전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 및 심의기구 등과 관련된 현행법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11조¹²⁾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안전관리에 관

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하여 ①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②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 ③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이하 “지하안전자문단”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2조¹³⁾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및 시·군·구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및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지방지하안전위원회”라 함)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7조¹⁴⁾ 및 제8조¹⁵⁾는 각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및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지하안전관리 관련 자문기구 및 심의기구 현황】

구분	자문 또는 심의기구	구성	기능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자문단	국토교통부령 ¹⁶⁾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u>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u>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시·도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대통령령 ¹⁷⁾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 <u>심의</u>
시·군·구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토목·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건축·토목·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심의기구’로서 지방지하안전관리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방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개정안 제11조의2는 국토교통부에 자문기구 외에 심의·조정기구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에서 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 ③지하안전관리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 ④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관리 정책 등과 관련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하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조정·협력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등을 내실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지하안전자문단(현행법)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개정안) 비교】

구분	지하안전자문단 (현행법 제11조)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개정안 제11조의2)
성격	자문기구	심의·조정기구
구성	국토교통부령 ¹⁸⁾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위원 ·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기능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관리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개정안 제11조의2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안전자문단을 운영¹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토목·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건축·토목·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9)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자문단 운영 현황

연번	일 시	회의 내용
1	2018.07.0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 법령 제도개선 추진 관련
2	2018.12.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 법령 제도개선 추진 관련
3	2019.03.28.	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수립 관련
4	2019.06.13.	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수립 관련
5	2021.07.20.~07.26.	지하안전 법령 해석 관련
6	2021.12.21.~12.30.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개정 관련
7	2022.09.29.	지하안전 제도 개선안 검토 관련
8	2023.05.19.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 개정 및 제도개선 관련
9	2024.06.26.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 개정 및 제도개선 관련
10	2024.12.12.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자문 관련
11	2025.01.16.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회의 관련
12	2025.05.23.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회의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의무화 등(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사고조사 등) ①·② (생략)	제46조(사고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③ ----- <u>지반침하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u> ----- <u>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u> ----- <u>조사하여야 한다.</u>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u>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④ ----- ----- <u>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u> ----- <u>조사하여야 한다.</u>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 ----- <u>및 제7항에 따른 결과 공표 등에-----</u> -----.

개정안 제46조는 ①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조사위원회”라 함) 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지방조사위원회”라 함)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를 의무화하고(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조사위원회 및 지방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를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7항 신설).

(1)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의무화

현행법 제46조²⁰⁾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사고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38조²¹⁾는 중앙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조사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된 예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²²⁾는 지방조사위원회 위원을

2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22)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단 구성) ① 도지사는 신속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전문분야별로 도지사가 5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원 : 2명 이내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5명 이내
3. 대학에서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15명 이내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15명 이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 중에서 도지사가 사고 발생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내용 등 지하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조사위원회 및 지방조사위원회를 공무원 외에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반침하 사고조사에 있어 공공 및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을 생각됨.

-
5.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명 이내
 6.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5명 이내
 7.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3명 이내

제5조(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 중에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내용 등 지하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2.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② 도지사는 위원에게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도지사가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반침하 사고에 대하여 중앙조사위원회 또는 지방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2024년에는 발생 사고 건수는 102건임에 비하여 지방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사례가 2건이고, 2025년에는 8월 31일까지 발생 사고 건수는 144건임에 비하여 중앙조사위원회 또는 지방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사례가 총 5건으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와 중앙 또는 지방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 건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반침하 사고 발생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고발생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조사위원회	지방조사위원회
2024년	102	-	2
2025년 (8.31.까지 발생 사고)	144	2	3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중앙

또는 지방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조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의무화는 신속한 현장 대처 및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현행과 같이 지반침하 사고의 규모·피해 정도·사고원인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사고조사 기간 및 결과 공표 명시

현행법 시행령 제40조²³⁾는 중앙조사위원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분석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 시행령 제41조²⁴⁾는 지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및 2025년에 구성된 중앙조사위원회 및 지방조사위원회의 운영 현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조사가 완료된 3건의 사고조사위원회는 약 3~5개월의 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완료 시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의 사고조사위원회는 2025.10.20. 기준으로 약 3~7개월 동안 조사 활동을 하고 있음.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세부내역 】

구분			구성일	활동 완료일	사고조사보고서 제출일	비고
2024 년	지방 조사 위원 회	부산시 (완료)	2024.8.30.	2024.11.19.	2024.11.19.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 땅꺼짐 사고조사
		부산시 (완료)	2024.8.30.	2025.01.22.	2025.1.22.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땅꺼짐 사고조사
2025 년 (8.31. 까지 발생 사고)	중앙 조사 위원회 (진행 중)		2025.3.31.	(운영 중)	(운영 중)	서울 명일동 땅꺼짐
			2025.8.5.	(운영 중)	(운영 중)	부산역 승강장 침하

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구분			구성일	활동 완료일	사고조사보고서 제출일	비고
	지방 조사 위원회	서울시 (진행 중)	2025.7.26.	(운영 중)	(운영 중)	동대문구 이문동 땅꺼짐 사고조사
		부산시 (완료)	2025.4.18	2025.8.4.	2025.8.7.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 땅꺼짐(2차) 사고조사
		광명시 (진행 중)	2025.5.12.	(운영 중)	(운영 중)	신안산선 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지하사고조사

※자료: 국토교통부, 2025.10.20. 기준

이에 비하여, 개정안 제46조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조사위원회 및 지방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를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조사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앙조사위원회 및 지방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되도록 하고,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를 통해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대책 등이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조기에 활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는 사고의 규모, 원인 규명을 위한 분석 필요 사항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실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사례에서도 위원회별로 조사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조사 기간은 현행법 시행령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지반침하 원인 제공자의 원상복구 의무 명시(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6조의2(원상복구 의무) ① 지반침하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가 자비(自費)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46조의2는 지반침하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가 자비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안 제1항),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하며(안 제2항),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안 제3항)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반침하의 복구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2조의2제1항²⁵⁾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38조제1항²⁶⁾ 및 현행법 시행령 제30조²⁷⁾는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하시설물관리자

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2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지하시설물관리자등”이라 함)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등이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하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22조의2제3항²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38조
제3항²⁹⁾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54조제1항³⁰⁾에서는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③ 국토교통
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예방 긴급안전조치 등 관련 조문 정리】

구분	지하개발 사업 관련 지반침하 위험(제22조의2 관련)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침하 위험(제38조)
지반침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u>지하개발 사업</u> 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u>발생</u> 하였거나 <u>발생할 우려</u> 가 있는 경우	<u>지하시설물</u> 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u>발생</u> 하였거나 <u>발생할 우려</u> 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 명령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u> 이 <u>지하개발사업자</u> 에게 안전조치를 명령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u> 이 <u>지하시설물의 관계인*</u> 에게 안전조치를 명령 *지하시설물의 관계인(영 제30조) :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안전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u>공사중지 명령</u> (전부 또는 일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u>직접 안전조치</u> (「행정대집행법」 준용)
	<u>벌칙</u>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에 따르면, 현행법 규정들은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의 긴급안전조치 등을 통한 지반침하 복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반침하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그 원인제공자가 자비로 원상복구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원상복구 명령, 원상복구의 명령 미이행시의 대집행 등을 규정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등 외에 지반침하의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원상복구 의무’ 및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항로표지법」 제36조³¹⁾ 및 「골재채취법」 제33조³²⁾ 등과 같이 항로표지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한 사람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사람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미이행시 대집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6항³³⁾

31) 「항로표지법」

제36조(원상복구의 의무) ① 항로표지(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하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관리하는 시설항로표지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수용한 시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자비(自費)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2) 「골재채취법」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

및 「재해구호법」 제13조제3항³⁴⁾ 등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등이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미이행 시에는 처벌하도록 하여 지반침하의 복구에

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34) 「재해구호법」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국가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반침하의 규모와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원상복구의 기간, 방법 등을 정하는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